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316
----------	-------

발의연월일 : 2024. 1. 18.

발 의 자 : 박대출·이명수·류성걸  
김예지·김형동·지성호  
이 용·박성민·김태호  
서범수·한무경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물가 추세에 따라 식품제조기업이 가격을 올리는 대신 그 용량이나 재료의 함량을 줄여 가격 인상효과를 노리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소비자들에게 이를 알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품의 용량이나 재료의 함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제품의 포장지 등에 이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오인하지 안하도록 하는 한편 건전한 거래질서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조, 제6조의2 신설).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 중 “내용량 및 원재료명”을 “내용량, 원재료명 및 원재료 함량”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내용량 및 원재료명”을 “내용량, 원재료명 및 원재료 함량”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이 조”를 “이 조 및 제6조의2”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변경내역 표시) ①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종전에 판매하던 용기·포장을 동일하게 유지한 채로 내용량을 변경하거나 원재료 함량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내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내역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변경내역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용량 변경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식품등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하여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표시의 기준) ①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p> <p>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p> <p style="padding-left: 20px;">가. <u>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u></p> <p style="padding-left: 20px;">나. ~ 마. (생략)</p> <p>2. (생략)</p> <p>3. 건강기능식품</p> <p style="padding-left: 20px;">가. <u>제품명, 내용량 및 원료명</u></p> <p style="padding-left: 20px;">나. ~ 아. (생략)</p> <p>② · ③ (생략)</p> <p>제5조(영양표시) ① 식품등(기구 및 용기·포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에 영양표시를 하여야 한다.</p> <p>② · ③ (생략)</p> <p><u>&lt;신 설&gt;</u></p>	<p>제4조(표시의 기준) ① ----- ----- ----- ----- ----- ----- 1. ----- ----- 가. -----<u>내용량, 원재료명</u>       <u>및 원재료 함량</u></p> <p style="padding-left: 20px;">나. ~ 마.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u>내용량, 원재료명</u>       <u>및 원재료 함량</u></p> <p style="padding-left: 20px;">나. ~ 아. (현행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영양표시) ① ----- ----- <u>이 조 및 제6조의2</u>-----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p> <p><u>제6조의2(변경내역 표시) ① 식품</u></p>

등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종전에 판매하던 용기·포장을 동일하게 유지한 채로 내용량을 변경하거나 원재료 함량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내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내역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변경내역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략)

<신설>

제31조(과태료) ① -----  
-----  
-----  
-----.

1. · 2. (현행과 같음)

3. 제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② · ③ (생략)	<u>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u> ② · ③ (현행과 같음)
------------	--